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694호 2022. 9. 7.(수)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34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과기어린이공원) 결정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634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과기어린이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과기어린이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2. 9.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원개요

- 공원명 : 과기어린이공원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57-2
- 면 적 : 2,394.7m²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 서구청 공원녹지과 (☎032-560-4802)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 생략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 총괄표(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57-2번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계	2,394.9	594.82	-	-	-	64	2,394.7	1,152	1	40.34	40.34	66	감)0.2㎡		
공 원 시 설	시 설 계	594.82	594.82	-	-	-	64	1,152	1,152	-	-	-	66	증)557.18㎡	
	기 반 시 설	소계	309.54	309.54	-	-	-	-	472	472	-	-	-	-	증)162.46㎡
		도로	19.6	19.6	-	-	-	-	472	472	-	-	-	-	증)452.4㎡
		광장	289.94	289.94	-	-	-	-	-	-	-	-	-	-	감)289.94㎡
	조경시설	-	-	-	-	-	4	-	-	-	-	-	-	감)4기	
	휴양시설	-	-	-	-	-	19	93	93	-	-	-	15	증)93㎡	
	유희시설	170.86	170.86	-	-	-	5	430	430	-	-	-	11	증)259.14㎡	
	운동시설	114.42	114.42	-	-	-	8	96	96	-	-	-	4	감)18.42㎡	
	교양시설	-	-	-	-	-	-	-	-	-	-	-	-	-	
	편익시설	-	-	-	-	-	-	61	61	1	40.34	40.34	-	증)61㎡	
관리시설	-	-	-	-	-	28	-	-	-	-	-	37	증)13기		
녹지 및 기타	1,800.08	-	-	-	-	-	1,242.7	-	-	-	-	-	녹지율: 51.99%		
시설율(% (법정60%이하)	$(594.82\text{㎡} \div 2,394.9\text{㎡}) \times 100 = 43.2\%$						$(1,152\text{㎡} \div 2,394.7\text{㎡}) \times 100 = 48.11\%$								
건폐율(% (법정 5%이하)	$(0.0\text{㎡} \div 2,394.9\text{㎡}) \times 100 = 0.0\%$						$(40.34\text{㎡} \div 2,394.7\text{㎡}) \times 100 = 1.68\%$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6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9.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2.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 기능을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 및 관련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 제3조 제1항에 ‘12.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신설 (안 제3조제1항)
- 제6조 제1항에 ‘6. 복지사각지대 구민(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천광역시 서구민을 말한다.) 우선지원과 선별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제3항의 전문위원회위원장의 직책 변경 등 관련 조문 정비
(안 제6조제1항, 제3항)

- 제7조(실무협의체) 제2항의 ‘20명’ 을 ‘10명’ 으로, 제9조(동 협의체) 제3항의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를 ‘10명 이상으로 한다’ 로 개정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부합한 협의체 구성인원 등 관련 조문 정비 (안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 전화 560-4291, 팩스 560-27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기능을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및 관련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을 “기업지원일자리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련 분야 담당 과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분야 국장”으로, “부재시”를 “부재 시”로 한다.

6. 복지사각지대 구민(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천광역시 서구민을 말한다.) 우선지원과 선별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및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20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육성팀장”을 “청소년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실문위원”을 “실무위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10명 이상 20명 이하로”를 “10명 이상으로”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위원이”를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능) 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p> <p>1. ~ 11. (생략)</p> <p><신설></p> <p>12. · 13. (생략)</p>	<p>제3조(기능) ① ----- ----- -----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u>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u>」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p> <p>13. · 14. (현행 제12호 및 제13호와 같음)</p>
<p>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 ③ (생략)</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가정보육과장, 교육혁신과장, <u>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u>, 실무협의체위원장과 동 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1. ~ 5. (생략)</p>	<p>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u>기업지원일자리과장</u>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p>	<p>제6조(전문위원회) ① ----- -----</p>

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자체 지침 또는 규정 등에 따라 의결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련 분야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장 부재시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 ⑩ (생략)

제7조(실무협의체) ① (생략)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정책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자활지원팀장, 노인복지팀

-----.

1. ~ 5. (현행과 같음)

6. 복지사각지대 구민(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천광역시 서구민을 말한다.) 우선지원과 선별에 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분야 국장-----
----- 부재시 -----
-----.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실무협의체)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위원장 ----- 10명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장, 장애인복지팀장, 여성가족팀장, 보육행정팀장, 청소년육성팀장, 보건행정팀장, 일자리지원팀장,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연합회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 6. (생략)

⑤ (생략)

제8조(실무분과) ①·② (생략)

③ 실무분과 총무는 실무분과 분과장이 실문위원 중 1명을 지명한다.

④ (생략)

제9조(동 협의체) ①·② (생략)

③ 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④ ~ ⑩ (생략)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 청소년팀장 -----

-----.

1. ~ 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실무분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실무위원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동 협의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0명 이상으로-----
-----.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

----- 위원 -----
-----.

② (현행과 같음)

